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218 제출연월일 : 2024. 7. 1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(期)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, 특별교부세는 수시로,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보통교부세는 매월 교부할 수 있고,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으며,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.

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교부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교부세 관련 자료·정보의 전산적 관리를 위하

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세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4(소방안전교부세의 교	제9조의4(소방안전교부세의 교
부) ①・② (생 략)	부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
	가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
	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0조(교부 시기) 교부세는 1년	제10조(교부 시기)
을 4기(期)로 나누어 교부한다.	
다만,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	다만, 보통교부세는 매월 교부
<u>수 있다.</u>	할 수 있고, 특별교부세는 수
	시로 교부할 수 있으며, 부동
	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
	어 교부할 수 있다.
제11조(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)	제11조(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
	단체의 장이 제9조의4제3항에
	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소
	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
	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
	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
	연도에 교부할 소방안전교부세
	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.
<u>④</u> 제1항부터 <u>제3항</u> 까지의 규	<u>⑤</u> <u>제4항</u>

정에	따라	교부세를	- 반환	한하	는
경우여	에는 대	대통령령으	卫로 7	성하	는
바에	따라	분할하여	반환	할	수
있다.					

<신 설>

제16조(교부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교부세 관련 자료·정보의 전산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세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있다.